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2. 12(수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1. 21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1. 23

라. 상정일자 : 2014. 02. 12(제21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·보완
-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따른 여건 변화 등 반영

나. 주요골자

- 시행령 제2조(공공기관의 범위)의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개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 명시(안 제2조)
- 법 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의 개정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현 실정

에 맞추어 빠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로 사전정보공개 목록 결정(안 제6조)

- 시행령 제14조(정보공개 방법)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을 “우편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”으로 수정(안 제7조)
-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영 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) 제2항으로 정리하고 사전정보공개 목록 결정 등 기능 추가(안 제10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(안 제11조 및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등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 이라한다.)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·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 - 안 제2조는 시행령 개정(2013. 11. 13)에 따라 확대된 공개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
 - 안 제6조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있어서 정보공개 수요가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능동적인 정보공개 여건을 마련하고자
 -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목록을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방법 등을 수정·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차준택, 최용덕, 류수용, 이강호, 홍성욱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공개대상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그 소속기관
 - 나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

제2조제2호 중 ““청구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청구인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공개대상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”을 “우편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”을 “법 제12조 및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
2.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결정
3.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7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여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<u>공개대상기관</u>”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) 및 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·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 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청구인</u>” 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</p> <p>제6조(정보의 공표) ① <u>공개대상기관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</p> <p>1. “<u>공개대상기관</u>” 이란 다음 각 목 <u>의 기관</u>을 말한다. 가. <u>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그 소속기관</u> 나.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(이하 “<u>시행령</u>” 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</p> <p>2. “<u>청구인</u>” 이란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제6조(정보의 공표) ① <u>공개대상기관</u>은 「<u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 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p>			

현행	개정안
<p>1. <u>시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·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</u></p> <p>2. <u>시 및 지방공사·공단</u>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</p> <p>3. <u>시의 시장, 부시장, 실·국·원·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</u></p> <p>5. <u>출연·출자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</u></p> <p>6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</p> <p>7. <u>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·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·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·측정 결과</u></p> <p>8. <u>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(교통 속도 및 교통량, 쓰레기 발생량, 인구 및 세대통계, 산업통계,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)</u></p> <p>9. <u>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</u></p>	<p><u>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.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·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.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. 교량·터널·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. 교량·터널·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.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.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·물품구매·용역 계약 8. 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10. 행정심판재결결과,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.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.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13.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,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	<p>②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공개방법)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·시청하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,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공개방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우편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정보공개심의회설치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9조(정보공개심의회설치) <u>법 제12조 및 시행령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. 법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3.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	<p>제10조(심의회의 기능) ----- -- <u>각 호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</u> 2. <u>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결정</u> 3. <u>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
<p>제11조(심의회의 구성)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11조(심의회의 구성) ①----- ---- <u>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</u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(생략)</p> <p>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<u>1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잔여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회의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, 관계공무원, 정보공개청구자 또는 <u>기타</u>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<u>한 차례만</u> ----- ----- . ----- --<u>전임</u> <u>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</u> -----.</p> <p>제12조(회의등)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.</p>